

의안번호	2205235
의 퇴 인	강선우의원
회 답 일	2024.11.26.
추 계 번호	24C481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보건의료인력별로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9,000만원 씩 추계기간 동안 총 4억 5,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90	90	90	90	90	450	9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의2 (보건의료인력정책 심의수급추계위원회)	○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u>보건의료인력별로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수급추계위원회”)를 둔</u>(제1항) ○ 각 수급추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항)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제5항) ○ 그 밖에 수급추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8조의2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 수급추계위원회)	○	○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하므로, 위원회 구성, 운영 방법, 횟수 등의 변경 시에는 추가재정소요도 달라질 수 있음¹⁾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2022년 7월~2023년 6월 운영 사례 준용²⁾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공무원 8인(위원장 포함), 수요자대표 및 공급자대표 6인, 전문가 5인 등 총 25인으로 구성되었으며(민간위원 총 17인, 전체의 약 70%),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 1년간 총 1회의 회의를 개최함³⁾
-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1) 참고로, 개정안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는 현행법 제15조제1호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및 수급관리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현실점에 위원회 개최 빈도를 현실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보건복지부는 2023년에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적정인력기준(안)’ 마련 연구를 위해 2억 7,000만원을 배정함

2) 「2023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행정안전부(2023) 참조

3) 2021년 1월에 1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된 후 2022년 6월까지 회의 개최가 2회에 불과하였으나, 정부가 동 위원회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지난 8월 16일에 새 위원(2기)을 위촉하고 2023년 1차 회의를 개최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현행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함
 - 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3항은 각 보건의료인력별로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함
 - －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 15개 직역을 말함
 - 안 제8조제5항은 위원회 정원을 15명 이내로 정하였으나, 공무원과 민간위원의 비율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사례를 준용하여 회의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는 민간위원 정원을 10명(약 32%)으로 가정함
 - － 참고로, 동 위원회는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전망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이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024년 8월 “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하며 의료인력 추계를 수행하기 위한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밝힘
- 추가재정소요는 각 위원회에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 수당을 추계하며, 이외의 운영비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전체 위원회 수(15개)에 위원회 민간위원 수와 참석 수당 단가 및 연간 회의 횟수를 곱하여 산출
 - (위원 정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는 민간위원을 10명으로 가정
 - (회의 횟수)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참석 수당 단가)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⁴⁾ 및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을

4)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경비, 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건

준용하여 3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보건의료인력별로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9,000만원 씩 추계기간 동안 총 4억 5,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구분							
안 제8조의2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위원회)	90	90	90	90	90	450	9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